|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  (1993년 12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4호 발표,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 1차 개정, 2017년 11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잠행조례>의 폐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행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정비 용역(이하 ‘용역’) 제공,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단위와 개인은 증치세 납세자로서, 본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증치세 세율  2.1 납세자가 상품, 용역, 유형자산 임대서비스 또는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17%이다.  2.2 납세자가 교통운송, 우정, 기초 전신, 건축, 부동산 임대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판매, 토지사용권 양도, 아래의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경우, 세율은 11%이다.  2.2.1 식량 등 농산품, 식물성 식용유 및 식용 소금  2.2.2 상수도, 난방, 냉방, 온수, 가스, 액화가스, 천연가스,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메탄가스, 가정용 석탄제품  2.2.3 도서, 신문, 잡지, 비디오 제품 및 전자출판물  2.2.4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  2.2.5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상품  2.3 납세자가 서비스, 무형자산을 판매 시, 본 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세율은 6%이다.  2.4 납세자가 상품을 수출 시, 세율은 ‘0’이다. 단,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2.5 경내 단위와 개인이 국무원 규정범위 내의 서비스, 무형자산을 경외로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3조 납세자가 세율이 다른 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세율이 다른 항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을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본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이하 ‘과세매출행위’)을 판매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은 당기 매출세액에서 당기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해야 할 세액=당기 매출세액-당기 매입세액  당기 매출세액이 당기 매입세액보다 적어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 부분은 이월하여 계속 공제한다.  제5조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과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세율에 따라 계산하여 수취한 증치세액을 매출세액으로 한다. 매출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출세액=매출액\*세율  제6조 매출액은 납세자가 과세매출행위 발생으로 수취한 전부 대금과 기타 비용을 가리킨다. 단 수취한 매출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출액은 위안화로 계산한다. 납세자가 위안화 이외의 화폐로 매출액을 계산할 경우, 위안화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7조 납세자의 발생한 과세매출행위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그 매출액을 산정한다.  제8조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지불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한다.  하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1 판매자로부터 받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명기한 증치세액  8.2 세관에서 받은 세관수입 증치세 납세신고서에 명기한 증치세액  8.3 구매한 농산품이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또는 세관수입 증치세전용 납세신고서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산품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 세금계산서 상 농산품 매입가격과 11%의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매입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입세액=매입가격\*공제율  8.4 경외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경내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세무기관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금 완납증명서에 명기된 증치세액  공제할 수 있는 항목과 공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9조 납세자가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취득한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유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하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0.1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단체복지 또는 개인소비로 인한 상품,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및 부동산  10.2 비정상 손실의 상품매입 및 관련된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10.3 비정상 손실의 반제품, 완제품으로 인한 상품(고정자산 불포함)매입, 용역과 교통운송서비스  10.4 국무원에서 규정한 기타 항목  제11조 소규모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과 징수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간이방법을 실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납부해야 할 세액=매출액\*징수율  소규모납세자의 기준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가 규정한다.  제12조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징수율은 3%이고,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13조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기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소규모납세자는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등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규모납세자로 간주하지 않고 본 조례 유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상품을 수입 시, 과세구성가격과 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구성가격과 납부해야 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구성가격=관세포함가격+관세+소비세  납부해야 할 세액=과세구성가격\*세율  제15조 하기 항목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15.1 농업생산자가 판매하는 자가생산 농산품  15.2 피임약과 도구  15.3 중고서적  15.4 과학연구, 과학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기기와 설비  15.5 외국정부 및 국제조직이 무상으로 지원한 수입물자(进口物资)와 설비  15.6 장애인 조직이 직접 수입하여 장애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15.7 자기가 사용하다 판매하는 물품  상기 규정 외에, 증치세의 면제 및 감면 항목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어떠한 지역, 부서도 모두 세금면제• 세금감면 항목을 규정할 수 없다.  제16조 납세자가 면세 및 감세 항목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및 감세 항목의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매출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면세 및 감세를 할 수 없다.  제17조 납세자의 매출액이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서에서 규정한 증치세 징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며 징수기준에 도달한 경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전액 계산하여 납부한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경내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내에 경영기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그 경내 대리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경내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제19조 증치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아래와 같다.  19.1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출대금을 수령하거나 매출대금을 요구한 증빙을 취득한 당일이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일  19.2 수입상품은 수입신고를 한 당일  증치세 원천징수의무 발생시간은 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제20조 증치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하며, 수입상품의 증치세는 세관이 대리 징수한다.  개인이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입국한 자가사용 물품의 증치세는 관세와 더불어 징수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유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1조 납세자의 과세매출행위가 발생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구매자에게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매출액과 매출세액을 각각 명기하여야 한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1.1 과세매출행위의 구매자가 소비자 개인일 경우  21.2 발생한 과세매출행위가 세금면제 규정에 적용될 경우  제22조 증치세 납세지점은 아래와 같다.  22.1 고정영업자는 그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사와 지사가 동일 현(시)이 아닐 경우, 각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무원 재정, 주관 세무기관 또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재정 및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본사에서 종합한 후 본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22.2 고정영업자가 타 현(시)에서 상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외출경영사항을 보고하는 동시에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22.3 비고정영업자가 상품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매지역 또는 용역발생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기관에서 세금을 추가 징수한다.  22.4 수입상품은 신고지역 세관에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기구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신고 하여야 한다.  제23조 증치세의 납세기간은 각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분기로 한다. 납세자의 구체적인 납세기간은 주관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많고 적음에 근거하여 심사 확정한다. 고정기간에 따라 납세할 수 없는 경우, 횟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1개월 또는 1분기를 납세기간으로 할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 납세신고를 한다. 1일, 3일, 5일, 10일 또는 15일을 납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내 세금을 예납하며, 익월 1일부터 15일내 납세신고를 하고, 지난 달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대납기간은 상기 두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납세자가 상품을 수입할 경우, 세관이 세관수입 증치세 전용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납세자의 수출상품이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세관에 수출수속을 하여야 하며, 수출세관신고서 등 유관 증빙을 지참하고, 규정된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기간 내에 월별로 주관 세무기관에 해당 수출상품의 세금환급(면제)를 신고처리한다. 경내 단위와 개인이 경외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무형자산을 판매 시 세금환급(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수출상품의 세금환급을 처리한 후 반품 또는 반환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법에 의거 이미 환급 받은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26조 증치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조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납세자가 증치세를 납부하는 유관 사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본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  （1993年12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34号公布；2008年11月5日国务院第34次常务会议修订通过；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根据2017年11月19日《国务院关于废止〈中华人民共和国营业税暂行条例〉和修改〈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货物或者加工、修理修配劳务（以下简称劳务），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以及进口货物的单位和个人，为增值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缴纳增值税。  第二条　增值税税率：  （一）纳税人销售货物、劳务、有形动产租赁服务或者进口货物，除本条第二项、第四项、第五项另有规定外，税率为17%。  （二）纳税人销售交通运输、邮政、基础电信、建筑、不动产租赁服务，销售不动产，转让土地使用权，销售或者进口下列货物，税率为11%：  1.粮食等农产品、食用植物油、食用盐；  2.自来水、暖气、冷气、热水、煤气、石油液化气、天然气、二甲醚、沼气、居民用煤炭制品；  3.图书、报纸、杂志、音像制品、电子出版物；  4.饲料、化肥、农药、农机、农膜；  5.国务院规定的其他货物。  （三）纳税人销售服务、无形资产，除本条第一项、第二项、第五项另有规定外，税率为6%。  （四）纳税人出口货物，税率为零；但是，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五）境内单位和个人跨境销售国务院规定范围内的服务、无形资产，税率为零。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三条　纳税人兼营不同税率的项目，应当分别核算不同税率项目的销售额；未分别核算销售额的，从高适用税率。  第四条　除本条例第十一条规定外，纳税人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以下统称应税销售行为），应纳税额为当期销项税额抵扣当期进项税额后的余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当期销项税额－当期进项税额  当期销项税额小于当期进项税额不足抵扣时，其不足部分可以结转下期继续抵扣。  第五条　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按照销售额和本条例第二条规定的税率计算收取的增值税额，为销项税额。销项税额计算公式：  销项税额=销售额×税率  第六条　销售额为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但是不包括收取的销项税额。  销售额以人民币计算。纳税人以人民币以外的货币结算销售额的，应当折合成人民币计算。  第七条　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的价格明显偏低并无正当理由的，由主管税务机关核定其销售额。  第八条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支付或者负担的增值税额，为进项税额。  下列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额中抵扣：  （一）从销售方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额。  （二）从海关取得的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的增值税额。  （三）购进农产品，除取得增值税专用发票或者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外，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买价和11%的扣除率计算的进项税额，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进项税额计算公式：  进项税额=买价×扣除率  （四）自境外单位或者个人购进劳务、服务、无形资产或者境内的不动产，从税务机关或者扣缴义务人取得的代扣代缴税款的完税凭证上注明的增值税额。  准予抵扣的项目和扣除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九条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取得的增值税扣税凭证不符合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税务主管部门有关规定的，其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第十条　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一）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免征增值税项目、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购进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和不动产；  （二）非正常损失的购进货物，以及相关的劳务和交通运输服务；  （三）非正常损失的在产品、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不包括固定资产）、劳务和交通运输服务；  （四）国务院规定的其他项目。  第十一条　小规模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实行按照销售额和征收率计算应纳税额的简易办法，并不得抵扣进项税额。应纳税额计算公式：  应纳税额=销售额×征收率  小规模纳税人的标准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第十二条　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为3%，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第十三条　小规模纳税人以外的纳税人应当向主管税务机关办理登记。具体登记办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制定。  小规模纳税人会计核算健全，能够提供准确税务资料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办理登记，不作为小规模纳税人，依照本条例有关规定计算应纳税额。  第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按照组成计税价格和本条例第二条规定的税率计算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和应纳税额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格+关税+消费税  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税率  第十五条　下列项目免征增值税：  （一）农业生产者销售的自产农产品；  （二）避孕药品和用具；  （三）古旧图书；  （四）直接用于科学研究、科学试验和教学的进口仪器、设备；  （五）外国政府、国际组织无偿援助的进口物资和设备；  （六）由残疾人的组织直接进口供残疾人专用的物品；  （七）销售的自己使用过的物品。  除前款规定外，增值税的免税、减税项目由国务院规定。任何地区、部门均不得规定免税、减税项目。  第十六条　纳税人兼营免税、减税项目的，应当分别核算免税、减税项目的销售额；未分别核算销售额的，不得免税、减税。  第十七条　纳税人销售额未达到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的增值税起征点的，免征增值税；达到起征点的，依照本条例规定全额计算缴纳增值税。  第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单位或者个人在境内销售劳务，在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在境内没有代理人的，以购买方为扣缴义务人。  第十九条　增值税纳税义务发生时间：  （一）发生应税销售行为，为收讫销售款项或者取得索取销售款项凭据的当天；先开具发票的，为开具发票的当天。  （二）进口货物，为报关进口的当天。  增值税扣缴义务发生时间为纳税人增值税纳税义务发生的当天。  第二十条　增值税由税务机关征收，进口货物的增值税由海关代征。  个人携带或者邮寄进境自用物品的增值税，连同关税一并计征。具体办法由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会同有关部门制定。  第二十一条　纳税人发生应税销售行为，应当向索取增值税专用发票的购买方开具增值税专用发票，并在增值税专用发票上分别注明销售额和销项税额。  属于下列情形之一的，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一）应税销售行为的购买方为消费者个人的；  （二）发生应税销售行为适用免税规定的。  第二十二条　增值税纳税地点：  （一）固定业户应当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总机构和分支机构不在同一县（市）的，应当分别向各自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经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或者其授权的财政、税务机关批准，可以由总机构汇总向总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  （二）固定业户到外县（市）销售货物或者劳务，应当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报告外出经营事项，并向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报告的，应当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的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  （三）非固定业户销售货物或者劳务，应当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未向销售地或者劳务发生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纳税的，由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补征税款。  （四）进口货物，应当向报关地海关申报纳税。  扣缴义务人应当向其机构所在地或者居住地的主管税务机关申报缴纳其扣缴的税款。  第二十三条　增值税的纳税期限分别为1日、3日、5日、10日、15日、1个月或者1个季度。纳税人的具体纳税期限，由主管税务机关根据纳税人应纳税额的大小分别核定；不能按照固定期限纳税的，可以按次纳税。  纳税人以1个月或者1个季度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15日内申报纳税；以1日、3日、5日、10日或者15日为1个纳税期的，自期满之日起5日内预缴税款，于次月1日起15日内申报纳税并结清上月应纳税款。  扣缴义务人解缴税款的期限，依照前两款规定执行。  第二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应当自海关填发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第二十五条　纳税人出口货物适用退（免）税规定的，应当向海关办理出口手续，凭出口报关单等有关凭证，在规定的出口退（免）税申报期内按月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该项出口货物的退（免）税；境内单位和个人跨境销售服务和无形资产适用退（免）税规定的，应当按期向主管税务机关申报办理退（免）税。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制定。  出口货物办理退税后发生退货或者退关的，纳税人应当依法补缴已退的税款。  第二十六条　增值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七条　纳税人缴纳增值税的有关事项，国务院或者国务院财政、税务主管部门经国务院同意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二十八条　本条例自2009年1月1日起施行。 |